



CHUNGCHONGNAM-DO COUNCIL

2023

12

의정
정보

공감하는 소통의정 | 변화하는 선진의정 | 실천하는 책임의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 목 차 ■ ■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3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5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7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9

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 11

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 13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 16

의정보론회 개최 결과 19

교육회복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 마련 21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33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추진 42

유보통합의 현황과 방향 48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62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73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75

관내 병원들과 업무협약 체결 77

최근 제·개정 법령 79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81

인삼산업법 시행령 82

사료관리법 시행령 84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8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8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94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시행 2023. 9. 21.] [울산광역시조례 제2797호, 2023. 9. 21., 제정]

이 조례는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

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광역센터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특화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 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9조(광역노후준비협의체) 시장은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8.] [전라북도조례 제5407호, 2023. 12. 8., 제정]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역생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적취득 지원 및 대상) ① 도지사는 국적을 취득하려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적 취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적 취득비용의 지원 대상은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적취득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국적취득 교육의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국적 취득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봉사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봉사활동 및 자조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의하여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

득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시행 2023. 11. 27.] [경기도조례 제7816호, 2023. 11. 27., 제정]

우 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도지사

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시행 2023. 12. 1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76호, 2023. 12. 11., 제정]

이 조례는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중독”이란 인터넷, 디지털기기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4.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이란 디지털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디지털 중독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중

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

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

[시행 2023. 12. 8.]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26호, 2023. 12. 8., 제정]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미래 정책 및 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정책 및 전략”(이하 “미래전략”이라 한다)이란 지역소멸 위기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말한다.
2. “지역소멸 위기”(이하 “지역소멸”이라 한다)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장·단기로 체류하며 소비활동을 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르는 사람
 - 다. 관광, 쇼핑 등의 목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내외국인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장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거환경정비 및 빈집 정비·활용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속 거주 보장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역사자원 발굴·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 관광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에 관한 사항
6.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미래전략 마련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중구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및 정책 자문
2.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
3.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자문
4.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③ 구청장은 자문단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 위촉 및 임기, 제3항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회의의 구성) ① 자문단은 분야별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소관분과별로 자문단(이하 “분과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단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단장이 분과자문단 단장이 된다.

③ 분과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부

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구의 지속가능성 확장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등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12.]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1호, 2023. 12. 12., 제정]

이 조례는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만남의 날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몰민”이란 용담댐 건설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고향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만남의 날”이란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위원회에서 입안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이하 “수몰민 만남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몰민 만남의 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수몰지역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수몰지역 읍·면 망향제 추진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나. K-water 용담댐지사 지사장

다. 용담댐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

라. 수몰민 중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

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몰민 만남의 날 지정 입안
2.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계획 입안
3. 그 밖의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과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교육회복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 마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23. 11. 1.(수) 14:00~16:00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5층)
 - 참석 : 100여명(관계 교원 및 공무원, 전문가, 학부모 등)
 - 주제 : 교육회복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대응 방안 모색
- ※ 신청: 구형서 의원

I 총 평

- 최근 교육현장은 학급 친구의 물리적 위협, 교실이탈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하여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육회복을 위해 이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정서행동의 문제를 보이는 회색지대 학생에 대한 지원책 부재에 공감하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및 정책적·법령적 기반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에 한목소리를 냄.
 - 또한, 학부모의 선입견으로 제때에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볼 때 학교차원에서 전문가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시 이를 적극적으로 학부모에게 권고, 고지 등을 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결론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① 김대용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재활치료학과 교수)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정서행동 지원 체계)

○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란: ADHD, 품행 장애, 반항 장애, 경계선 지능 등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 전국 유·초·중등 교사 681명 중 87.1%가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있다고 응답 ('23.8. 좋은교사운동)

• 행동 유형 : 친구 때리기·꼬집기 등, 교실 이탈, 욕설과 폭언 등

• 학생 유형(중복) : ADHD(78.6%), 반항(52.9%), 품행(50.5%), 무기력(49.7%) 등

-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23. 7. 한국교총, 교원 32,951명)

• 현재 교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각 제지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이라는 데 동의(98.7%)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분류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정서행동장애 이외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정서행동문제를 보여 자신과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이거나 선정되지 못했지만 정서행동의 문제를 보여 자신과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 ③번에 해당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협의체의 부재, 행동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와 정서행동 지원 주체 등의 부재로 일선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

- **긍정적 행동지원(PBS/PBIS)**: 모든 학생들의 학업적 능력 증진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학교 전체가 협력하는 접근 방법

- 1997년에 IDEA에 명시, 1998년에 미국 교육부 산하 긍정적 행동지원 센터 설립, 현재 40,000개 이상에 적용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 출석률, 사회성, 정서행동 위기에방에 효과적임.

- 체계적인 생활지도 방법(학교 내 지원)

① 1차예방-보편적 지원

-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생활지도!
- 정서행동 특성 검사
- 학교 생활지도 시스템(그린마일리지, 상벌제 등)

② 2차예방-소그룹 지원(학급차원의 지원)

- 보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생활지도
- 특수학급, 위클래스 등
- 사제동행 프로그램, 학급 규칙, 칭찬시스템 등

③ 3차예방 - 개별 지원

- Real 문제행동, Real 범죄행동
- 공격행동, 자해행동, 집단폭행, 게임 중독 등
- 기능적 행동평가

⇒ 긍정적 행동지원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 요소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 또한 행동지원 계획 수립, 개별화교육계획 협의체 등 정서행동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학교 밖 지원)**: 학교 내 지원에서 1차예방, 2차예방과 연계하여 운영

① 2차적 안전망

- 교육청의 위(Wee) 센터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장애학생) 행동발달증진센터

② 3차적 안전망

- 위(Wee)스쿨
- 병원형/가정형 위(Wee) 센터

○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정책적·법령적 가이드라인의 부재
 - 정서행동위기 지원의 회색지대의 학생을 위한 협의체 필요
 - IEP(개별화 교육계획)와 BIP(행동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 심각한 행동을 위한 위기관리에 대한 정책적·법령적 기반 부족
-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추가 인력 배치
 - 학교 내 행동중재전문가 양성과정(현직교원, 퇴직교원 등)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 수준별·계층별 변화가 필요한 사항

- 1수준 (개별적 변화): 개별 교사의 교실 내 수준에서의 변화
 -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
 - * 예: 학생의 특정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방식 변경, 개별 학생과의 상호작용 방식 조정, 교실의 룰 설정 변경 등
 - 다양한 연수 및 교육 기회 참여
 - 정서행동 선별 및 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전문성이 필요함
 - 현장에서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함

- 2수준 (조직적 변화): 학교의 팀 또는 부서의 수준에서의 변화

- 담임 교사, 학년 담당 교사, 상담 선생님, 학교 행정진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변화로, 개별 교사의 교실을 넘어선 학교 내 다른 교실이나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포함

* 예: 학년 전체의 행동 관리 방안 도입, 새로운 상담 프로그램의 시행, 팀 티칭 방식의 도입 등

- 체계적인 지원 체계 수립
- 교직원 대상 연수 및 전문성 향상기회 제공
- 체계적인 행동지원을 위한 행동지원계획(Behavior Intervention Plan) 도입
- 학교 차원의 행동 관리 체계 도입 (CICO 등)

- 3수준 (시스템적 변화): 학교 전체나 교육 시스템의 수준에서의 변화

- 학교의 정책, 지침,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규제나 방침 등의 변화를 의미로 이러한 변화는 교육청, 학교 이사회 또는 교육부의 결정을 필요

* 예: 학교 전체의 행동 관리 정책 변경,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특별 교육 지원서비스의 확대 등

- 법령, 특별교부금, 매뉴얼 등 법적, 예산, 지원체계 개발
- 실질적인 정서행동진단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학교 현장 과 학교 밖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지원 강화

2 지정토론(5인)

① 김정민(순천향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 눈에 보이는 장애만 장애로 인정되는 현실

- 현행법상 정서·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일반적 지원과 개별화교육계획(IEP)을 통한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 통합교육 지원,

그리고 행동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외형상 눈에 보이는 장애만 장애로 인정하는 현실은 코로나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와는 괴리가 있음

- 전문가나 교육자들은 정서·행동 장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정부에 지속해서 어필하고, 미국 IDEA에서처럼 학생 자신과 다른 학생의 학습에 방해되는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 계획을 포함하도록 특수교육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함

○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현황 및 지원책

- 우리나라에서 PBS(긍정적 행동지원)는 다층 지원 모형 중에서 Tier3(개별적 지원)가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널리 알려졌음. PBS는 커리큘럼 또는 교육적 패키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 중 하나임. 따라서 학교의 특성에 따라 PBS를 적용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함
-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지원하고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PBS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특수교육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PBS 자문의 경우, 각 학교에서 의뢰된 문제행동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중 개별적 중재가 필요한 대상을 위원회에서 선별한 후 중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 또한 일부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PBS 전문가를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훈련 과정이 일반적인 시스템(매뉴얼)에 그치는 수준
- 학교 차원의 PBS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됨. 해외의 성공 사례가 곧 우리의 성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음.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에 맞는 모델로 수정·보완하여 적용해야 하며, 행동이 고착화 된 이후보다는 학령기 이전에 시행할 것을 권장함

② 오황균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 충남 정서·행동 위기학생 현황, 지원내용, 교육정책 방향

○ 학부모와 소통 강화를 통한 관심군(고위험군) 관리 강화

- 학부모 선입견 등으로 전문기관 연계가 어려운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교장 직권으로 위기관리위원회에서 학생 상담과 치료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

○ 가정과 연계한 “문제행동 교정” 강화 추진

- 학교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 보다는 가정과 연계한 교육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학생의 문제행동이 나타나면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행동교정과 치료방향을 정하여 꾸준히 행동교정을 추진해야 함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강화를 통한 지원

- 연계기관을 서비스별로 유형화하여 정신건강, 가정문제, 교우관계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또한 정서행동특성검사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실시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사업 확대 추진

- 자살징후 발견 시 전문 병원 기관 연계 및 조치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강화 필요

○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강화를 통한 학생 마음근육 단련

-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구축과 더불어 Wee프로젝트 사업을 체계화하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지원서비스망을 더욱 강화해야 함

③ 이유진 (천안월봉초등학교 교사)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현재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 3장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살펴보면 학생을 지도할 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의 단계로 지도하도록 제시됨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으며 학생을 훈육할 때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계에 따라 분리할 수 있음
- 토론자의 학교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혁신학교로 고시와 관련하여 학년 협의, 부장협의 및 전직원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있음. 현재 논의된 내용으로는 수업중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1, 2학년은 교무실로, 3~6학년은 각 학년 소속 업무부장교사에게 연락을 취한다는 것임. 분리장소는 1, 2학년은 교무실, 3, 4학년은 생활안전실, 5, 6학년은 생활상담실로 협의를 통해 구두로 정하였음. 1, 2학년이 3~6학년과 다르게 정해진 이유는 1, 2학년은 현재 전담교사가 없이 담임이 오롯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임

○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방향

-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Class-Wide PBS, CWPBS)과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School-Wide PBS, SWPBS)로 구분됨. 긍정적 행동지원은 지원의 대상이 될 학생의 범위와 제공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보편적 지원(그린 존), 표적집단 지원(옐로우 존), 개별적 지원(레드 존) 등의 세 차원으로 구분함
- 행동지원 프로세스는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응용행동분석이나 PBS (긍정적 행동지원)를 적용한 개별중재 프로그램임. 문제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목표행동을 설정하여 확인하고 격려하며, 행동약속 점검카드 등으로 기록하여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행동지원 프로세스를 일반 교실에 적용해 보았을 때 효과가 있었지만, 담임교사의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전문가, 학교 차원의 긍정적인 행동지원 시스템 적용 등 학교 차원의 공동체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 맺는 말

-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어려운 상황임. 대부분 한 명의 학생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정서행동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교사의 양성 및 배치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④ 김지상 (모산중학교 교사)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중학교를 중심으로)

○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의한 현장

- 실제로 우리 학교의 사례를 봐도 천명이 넘는 학생들 중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수는 1%도 되지 않음. 문제는 그렇게 소수의 학생에 의한 학교 폭력,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등이 매우 크다는 것임

○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 가장 먼저 학교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예방 및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함
- 현재의 학교에서 지도하기 힘든 수준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서행동 위기학생 전담 교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해당 인력을 찾거나 양성하는 것도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듦. 또한 반항, 위협, 물리적 공격 등의 심각한 문제행동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말하고 싶음. 학교의 상담 선생님들은 수많은 일반 학생들의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음.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집중할 경우 일반 상담이 매우 악화 될 우려가 됨
-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이 되는 것이 선제적인 일인데 학부모님들이 이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검사와 결과에 동의 또는 이를 고지하는 법제적 장치가 필요함

⑤ 이창숙 (일수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긍정적행동지원협의체 활동 경험에서 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대응 방안

- 아이가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태도 또는 교사 능력과 영향에 대해 먼저 문제제기를 함.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문제를 단순히 한사람의 부모에게 또는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함. 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음

○ 긍정적행동지원이 가능하려면 교사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줄여야 가능

- 2018년 쯤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아산성심학교에서 긍정적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함.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특수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직·간접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임
- 긍정적행동지원은 목표행동을 선정해 기능평가를 한 후 선행사건과 행동 그리고 후속 결과라는 ABC 관찰기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행동 관찰을 한 후 중재를 하고 효과가 있으면 종결함. 그러나 효과가 없으면 다시 행동 평가를 하고 중재계획을 다시 수립해 중재를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함
- 학급을 운영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지도 등 업무 이외에 대상학생의 중재계획과 실행 등을 수행하기에 특수교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함

-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면 교사 1인 당 학생 수를 줄여 촘촘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함

○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

- 많은 경우 정서행동의 어려움이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들을 설득하는데 정서행동 위기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 하나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훈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도 있음. 정신과 약물복용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행동이 더 심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음. 인식변화를 위해 전문의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

○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

- 상담자로서 정서행동장애로 인해 일반학급도 특수학급에도 갈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낌. 회색지대의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 및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함

3 종합토론

의견>

【구형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제자·토론자 모두 한목소리로 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공감 하였음. 전문인력 지원, 학부모 동의 문제, 협의체 구성 등 모두 먼저 관계 법령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의견>

【김태곤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충남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은 병원형Wee센터가 없고, 관련 의료기관 접근성도 떨어짐. 도의회 차원에서 의료기관 건립 등 전문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

【김종혁 월봉초등학교 교사】

교육청, 학교차원의 정서행동 위기팀이 필요. 교사가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담팀을

통한 해결 방법 모색, 의료지원 연계 역할도 함께 요구됨. 또한 교사양성 과정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넣을 필요가 있음

의견>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원】

학부모를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알지 못해서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이들 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 인력 동원은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워 짐. 수석교사제도를 활용도 고려해볼만 함

III 토론회 결론

1.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도·대응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등을 일반학교 적용 필요성에 공감함
2.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먼저 관련 협의체 구성과 행동지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3. 또한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문가 상담 및 치료 권유 시 이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4. 장기적으로는 각 학교에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전담 인력 양성·배치가 반드시 필요함
5. 결론적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지방정부-교육청-지역의료기관 등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등)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 농업 현장, 정책 실무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의 현황 및 한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의정토론회를 실시함.

I 총 평

-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는 지방소멸과 출생률 감소로 농촌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중요해진만큼 농업인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함.
- 외국인 농업인력제도의 실수요자인 농민과 정책 실무자인 시·도 관계 공무원, 연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활용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외국인노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현재 충청남도의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약 1,564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자가노동력을 제외한 고용노동력은 27.3%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 시기별 인력수요는 연중 주로 봄, 가을에 집중되며 1~2개월간의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활용 제도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현황과 한계를 돌아보고, 지역맞춤형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추진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특히, 농업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성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하는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에 대해 살펴봄.

- 이는 추후 충청남도에도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며, 충남연구원을 통한 후속 연구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청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농업 인력 수요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조원지 연구위원(전북연구원)

-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향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제는 비자 발급을 기준으로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지역특화형 비자’로 구분할 수 있음.
 -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1회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함.
 - 계절근로자제(E-5, E-9)
 -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3개월,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2019년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됨.
 - 프로그램 신청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며, 5개월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계절성이 있는 농어업에 허용됨.
 - 지역특화형 비자
 -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했을 때, 거주(F-2) 또는 동포(F-4) 비자를 선발급 해주는 제도로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함.

○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문제 해결과 농업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발급하는 비자로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인력과 농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농촌 지역에 체류하며 농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함.
- 농촌지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또는 전북 소재 농업 관련 대학교(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이 농촌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면, 거주(F-2) 비자로 전환 가능하며, 가족을 계절근로자(E-8)로 초청할 수 있고, 자녀보육 및 교육지원과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등을 제공함.

○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

- 계절성이 있는 농업 부문에서 단기간 고용되어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성실 계절근로자(E-8)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 8개월간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농가의 재고용이 보장된 계절근로자 중 안정적,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함.
- 자격요건은 첫째, 성실계절근로자(E-8), 둘째, 이들을 적극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농가주가 있는 경우, 셋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전환시 4년 10개월 동안 신청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해야하며, 넷째,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어야 함.

○ 지역맞춤형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추진체계

-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전담부서를 설치해 사업운영,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외국인노동자 DB 구축과 관리, 지역맞춤형 외국인 농업인력 비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함.

[2] 지정토론(4인)

① 양두규 과장(충청남도 농업정책과)

□ 충청남도 농업인력 대책(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

○ 충청남도 외국인 노동자 현황

- 도내 합법적 근로자는 8천명으로 고용허가제 4.7천명('23.6 기준), 계절근로자 3.3천명('23.9 기준) 정도로 추정됨.
- 고정인력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축산 및 시설재배 농가 등은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단기인력 확보가 필요한 과수류, 노지채소 농가의 경우는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음.

○ 농번기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23.9월말): 3,302명
- 계절근로자 도입 MOU 추진 6개국 25개 지자체

○ 앞으로 추진계획(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단위 중간조직 육성 추진
-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확대: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 농촌인력증개센터(공공형 확대): 시군별 1개소 이상 구축

② 정기영 팀장(논산시 농천인력지원팀)

□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초단기(1~10일 이내), 5~8개월, 상시 등 인력 필요 시기가 농가 영농 조건에 따라 다양

- 2023년 6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 입국으로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가능
- 연간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어 출국 후 연내 재입국 가능(연간 최대 11개월 체류 가능)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단기 인력 필요 농가에 노동력 제공

- 계절근로자의 업무 숙련도가 인력사무소나 기존 인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 업무 초기 숙련도 부족을 감안하여 계절근로자 고용 필요
 - 근무기간 5~8개월, 외국인노동자 재입국을 통해 해당 농가에서 재고용 가능 하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 증가
-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싶으나 노동자의 숙소를 농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계절근로자를 초청한 결혼이민자의 주택을 숙소로 활용가능 하므로 농가 부담 경감, 결혼이민자 및 노동자의 정서적 안정
 -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 추진을 통해 운영주체(연무농협)가 숙소 구비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필요(시군 희망 시 시군별 2~3개소 선정)
- 강화 된 숙소 요건으로 숙소 구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③ 최용재 조합장(연무농협)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결과

- 농협은 지자체가 선정한 계절근로자 운영주체로서,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함.
- 논산시는 몽골(날라이호구시)과 MOU를 맺고, 총 33명의 계절근로자(E-8)가 입국함.
- 인력 가동률은 5월 기준 86.4%로, 전국 19개 지자체 중 2위이며, 인건비는 319,055,958원 소요됨.
- 계절근로자의 작업 능력 미숙 등으로 입국 초반 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입국 초 2주 정도의 실습기간을 두어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등의 적용에 따라 인건비 손실이 큰 상황으로,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70%로 설정한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인노동자 입국 후 마약검사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 등 농협에서 수행해야 할 후속작업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행정 대행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협조가 필요함.

④ 이대현 대표(오토팜)

□ 농업 제도,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다

- 농업현장에서는 '숙련근로자의 유지', '외국인 숙소문제 해결', '불법근로자 단절', '파견근로가능'이 요구되고 있음.
 - 숙련근로자의 유지: 숙련된 근로자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농업인 간의 상생적인 관계 형성과 상호간 수익 상승에 도움이 됨.
 - 외국인 숙소문제 해결: 현 제도상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농촌에 정식허가된 건물을 구하기 쉽지 않고, 신축 비용 부담이 커 규제 완화가 필요함.
 - 불법근로자 단절: 불법근로자 단절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정식 근로자로 대체하며 인건비 상승을 해소할 수 있음.
 - 파견근로: 현재 파견근로가 불가능하나 농가에 일이 없을시 근로자 유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파견근무를 허용해야 함.

③ 자유토론

□ 고용허가제 강화 필요(이대현 오토팜 대표)

-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근무 기간이 짧은만큼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계절근로자제보다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논산시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농민들이 고용허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힘써야 함.
- 현재 외국인노동자에게 월 급여를 약 250만원씩 지급하는데, 불성실한 단기 근로자의 급여보존을 해주어야 하니 주객이 전도된다고 판단될 때가 있음.
- 보다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성실근로자들은 더 장기적으로 농가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 운용상 문제(딸기농장 운영자 A 씨)

- 농촌근로자에게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시급은 해마다 오르고, 퇴직금까지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현실 적용이 어려움. 차라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임.
-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음. 이탈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추적이 되지 않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함.
- 농가에 온 외국인근로자들은 일이 더 편하고, 급여가 높은 공장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음.
- 고용허가제도 수요에 비해 공급가능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신청 과정도 복잡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가에서는 신청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외국인노동자제도 운영시 행정 편의성 중심이 아닌 정책의 실수요자인 농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 불법체류자들 중 성실근로자들을 일부 양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외국인계절근로자제 안착 필요성(잎채소 작목 회장 B 씨)

- 만들어진 제도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좋은 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짐. 제도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개선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계절별로 일자리 수요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근로자제가 마련된 것은 공감함.
- 앞채소의 경우 가격 널뛰기가 심한데 가격이 떨어졌을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 등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계절근로자 임금 보전을 위해 생산을 하다보니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악순환이 발생할 때도 있음.
- 계절근로자의 경우 숙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을 가르치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소요되고 인력 이탈도 심각함.
- 외국 사례처럼 일손 수요가 극심할 때 불법체류자들을 찾아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Tax ID를 부여하여 불법체류한 기간에 대한 벌금을 매기고,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융통성 있는 인력확보가 필요함.
- 숙소 문제도 농촌의 빈집을 고쳐서 숙소로 쓸 수 있도록 현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노동자를 먹여살리는 농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관심이 절실함.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의 개선을 위해 농업 종사자와 정책실무자, 연구자 간의 토론을 통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봄.
- 농가의 계절별 탄력적 외국인노동자 인력 활용을 위해 계절근로자제가 도입되었지만, 저숙련노동자를 숙련시키기 위한 시간과 비용 지출, 농가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책정 및 숙소기준, 불법체류자로의 이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임금 책정, 숙소 요건 등 제도의 규제적 측면 완화에 대한 농업종사자들의 요구가 있었음. 또한 성실근로자의 장기체류에 대한 필요성은 농가와 연구진, 공직자 모두 공감하고 있었음.
- 따라서 계절근로자를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형 계절근로자제'에 대한

도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지자체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V 후속조치

-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도출과제에 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함.
- 2023년 7월 발간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반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충남연구원을 통한 후속과제 발굴 및 농가의 외국인근로자제 안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추진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중 GTX-C노선은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14개의 정거장을 정차하는 74.8KM의 노선을 개통할 계획임.
- 이를 충청권의 천안·아산 지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

I 총 평

- 본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중 GTX-C노선을 천안·아산 지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준비한 토론회로,
-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도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를 설명하고, 쟁점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함.
- 토론회 중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GTX-C 천안·아산 연장운행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4,58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95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직접 고용효과로는 1,920인, 간접 고용효과는 1,591인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음
- 이를 위하여 GTX-C 노선 중심의 녹색교통 중심 교통체계 개편 추진, 천안역을 중심으로한 역세권 콤팩트시티(복합용도지구제) 적용, 정차역 세부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을 통한 자원조달 및 분담방안 연구 등이 과제로 도출됨.

⇒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을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1인)

○ 김항배 교수 (남서울대학교)

『GTX-C 천안·아산 연장운행의 타당성과 성공적인 추진전략』

- GTX는 지하 40~50m에서 평균속도 100km 최고속도 200km로 기존 지하철 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중심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열차를 말함.
- 그 중 GTX-C 노선 확정구간은 덕정부터 수원까지 74.8km로 이를 75km 추가 연장하여 천안·아산까지 연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한 사업비 규모는 천안역까지 연장시 3,340억원, 신창역까지 연장시 4,353억원이 예상됨.
- GTX-C 개통시 온양역에서 천안까지 7분, 수원역까지 40분, 삼성역까지 60분에 도달이 가능하며,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아산 신도시 및 R&D 집적지구와 수도권 1시간 통근권이 실현됨. 이에 따라 수도권 우수 인재를 천안·아산에 유치하여 도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함.
-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충남지역 생산유발 효과 4,58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51억원이 발생되며, 직접 고용효과는 1,920인, 간접 고용효과는 1,591인임.
- 이를 위하여 연장운행 정차 도시별 사업비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어, 천안·아산 등 6개 지자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며, 녹색교통 구축, 역세권의 콤팩트 시티, 복합용도지구제 등 노선 중심의 지역개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② 지정토론(3인)

① 맹명호 위원장 (GTX-C 노선 천안 연장 추진위원회)

- 「GTX-C 노선 천안 연장 추진위원회」는 순수 민간단체로 GTX-C 천안 연장 확정을 염원하는 70만 천안 시민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운영 중임.
-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 협의회, JC(한국청년회의소 천안) 등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많은 민간 단체장들이 참여 중임.
- 현재 천안에서는 ‘천안역 개량사업’과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천안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여기에 GTX-C 노선까지 연장된다면 천안역 인근은 천안·아산역이 위치한 신도심 못지않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노선 연장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
-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정권 교체시 사업계획의 변경이 생길수 있음, 따라서 연장이 확정된 후에도 체계적인 사업 계획 진행이 필요함.

② 신범철 (전)차관 (국방부)

- 천안시 입장에서는 중장기적 비전과 GTX-C의 역할, 그리고 연계사업 등 포괄적인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구도심 재개발 및 도시재생, 상권부활, 연계 교통망 등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함.
- 천안역사의 기능과 규모도 이러한 비전의 틀 속에서 구상이 필요할 것이며, 서울 출퇴근, 독립기념관 등의 관광산업, 공단 및 공항 연계의 노선 뿐만이 아닌 모든 인프라의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함.
- 필요 예산의 원인자 부담 방식의 장단점을 숙고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사업의 속도, 시민의 부담, 타 지자체 협력 등 많은 방면에서 도와

시의 고민이 필요함.

- 여야를 떠나 충남과 천안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성숙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함.

③ 유택권 과장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 천안·아산권의 면적은 1,178.9km²(천안 636.1km², 아산 542.8km²)로서 충남의 14.3%, 인구는 991천명(천안 658천명, 아산 333천명)으로 충남의 46.7%에 해당되고 대도시권(Metropolis)을 형성하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융복합산업 기반을 형성함. GRDP는 56조 35억 원(2020년 기준)으로 충남 전체의 48.5% 차지함.
- 2022년 기준 천안 및 아산 수도권 전철 1호선 1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하루 약 6만 5천 명(천안 42,391명, 아산 22,347명)으로 지역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자리함.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천안역에서 강남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철도망이 부족한 현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GTX-C 노선의 충남권 연장은 기존 철도 대비 속도 경쟁력 우위와 서울 주요 도심구간을 경유하는 강점으로, 기존에 2시간가량 소요되던 천안역에서 삼성역까지를 50분대로 통행, 이는 수도권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이룰 것임.
- 이미 구축된 철도시설을 활용, 개량하는 사업의 특징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여 GTX-C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국가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충청남도는 국토교통부, 국회, 지방의회, 기초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3 마무리 말씀

신한철 의원

- GTX-C 노선의 천안·아산까지 연장은 민선 8기 김태흠 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며

천안, 아산 시민들을 염원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경제성, 정책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임.
-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의 의견이 노선연장 사업에 한발짝씩 다가가는 말씀이었음, 우리 충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노선이 개통되는 그 날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음.

III 토론 과제 도출

과제 1) 노선연장 상세 사업비 구체화



- GTX-C 연장 운행 구간 내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6개 지자체 협의체 운영
-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위한 정치역 세부설계, 상세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실시설계 수량 산출
- 행정구역 비례분담 방안, 정치 도시별 이용수요 비례분담 방안 등 사업비 분담기준 마련

과제 2) GTX-C 노선 정차에 따른 공간개발 전략 구상



- 수도권 급행철도와 도시철도 네트워크 간 연계를 통해 자동차 교통 중심에서 친환경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필요
- 천안역과 천안아산역의 광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수도권과 충남권 환승 연계 거점 구축
- ‘천안역 개량사업’과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한 도시 중심부에 주거, 상업 시설을 밀집시킨 컴팩트시티 도시 모델 개발 방안 모색

IV 앞으로 할 일 (행정·협조사항)

- 토론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천안시 등

유보통합의 현황과 방향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3. 11. 24.(금) 14:00~16:30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참석: 200여명(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 주제: 유·보통합의 현황과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통합 방향 모색
※ 신청: 홍성현 부의장

I 총 평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여러 현황과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또한 차별없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음
- 교사양성체계에 대해서는 과도기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사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냄
-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균질한 평가 및 관리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되길 기대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도 교육청 차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1인)

① 심은희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보통합의 현황과 쟁점

○ 유보통합 개념의 변화

- 산업화의 진행,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기혼여성의 취업형태 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 강화 추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사 기능이 확대 요구됨
- 보육 관련 학문의 발전으로 종래의 보호·양육 위주의 개념에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함
- 교육과 보호를 포함한 영유아의 초기경험의 중요성, 영유아 발달과 가족의 복지가 강조되고, 일하는 여성의 증가는 교육과 보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 심각한 초저출산의 인구위기
- 생애 출발선 평등, 형평성의 과제인 유아교육·보육의 서비스 질 확보
- 이원화 되어 있는 행·재정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
- 유보통합의 8요소: 행정, 규제, 교육과정, 접근성, 인력, 재정지원,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통합된 인식

○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

- 유보통합의 단계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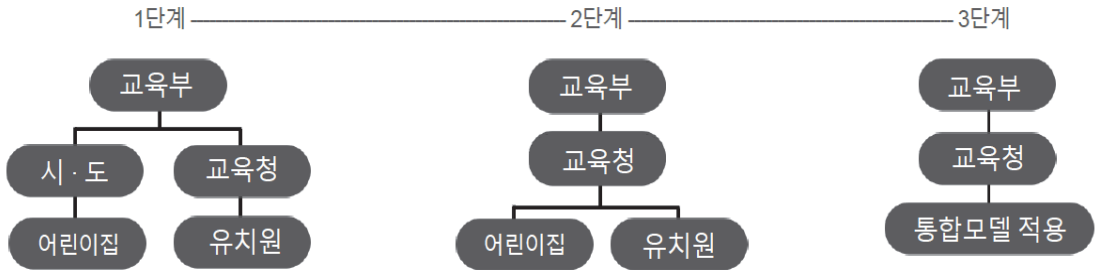
1단계(2023년 ~ 2024년)	2단계(2025년~)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 마련 - 유보통합의추진방향: ① 학부모의 교육 돌봄 부담 완화 ② 교사 처우개선 및 자격 양성체제 개선방안 ③ 안전한 환경(시설) 조성 ④ 조직의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⑤ 재원이원 및 통합추진 ⑥ 관련 법률 제·개정추진	-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본격시행 -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 ① 교사의 개편된 자격 양성 과정 적용 ② 설립·운영 기준 개선안 적용 ③ 조직의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통합 지원,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제·개정 법률 시행

- 유보통합 1단계(2023년~2024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 통합기관 모델 구상: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함

교사	교육과정	설립·운영
교사의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자격양성체제 개편 추진	미래역량 반영, 특별한 요구가 있는 유아, 교사지원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통합,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체계화	학부모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 하면서, 지역적 특수성 등이 반영된 기관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 별·기관별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 하고,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에 필수적인 시설기준의 합리적 상향 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의 질적수준 을 담보하는방향으로 논의

• 유보통합 3단계 실행 모델



- 유보통합 2단계(2025년~): 유보통합의 본격적 시행

-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및 운영
 - 1)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 돌봄 지원
 - 2) 지역별 영유아 추계 및 수요에 따른 기관 수급 계획 수립, 지역 여건에 따른 기관 배치 및 질 관리 등 추진
-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교사	교육과정	설립·운영
1단계에서 마련한 교사자격양성체계 개편안 및 처우개선안을 적용하여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	2026년 현장 적용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하여 교육과정 제정 추진	지역별·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합기관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경과규정 적용 등을 통해 기존기관에 대한 통합기관으로의 전환 추진 및 지원

○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 사항

- 교사양성체계
 - ① 근거법의 통합
 -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의 변경
 - 교육대상 0~5세 영유아 통합교사 양성체계 수립을 위한 근거법 확립 필요

② 자격 구분

- 현행 자격체계

- * 유치원교원: 준교사-정교사2급-정교사1급-(수석교사)-원감-원장

- * 보육교원: 3급-2급-1급-원장

- 원격교육을 통한 교사 배출 문제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의 문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협조하여 해결 필요

- 보육교사3급 자격증 취득 문제: 2% 미만으로 영향력은 미미. 폐지 시 연수기관으로의 역할 전환

- 유치원 준교사 문제: 실제 배출 없음

③ 교사양성방식

- 유아교육과의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

- * 전국의 모든 유아교육과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고 있음

- * 보육 아동 관련 학과에서는 교육부의 승인 받은 경우만 정원의 10%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됨

④ 양성기관

- 통합교사 교원양성기관의 재정비

- * 원격교육의 문제: 방송통신대학과 달리 사립 사이버대학은 난립되어 있고, 국가 통제를 받지 않음. 교사 통합 후 동일한 기준에 재정비 필요

- *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와 협력 하에 역할 전환 또는 보조교사로 제한

- * 보육교사교육원은 폐지 및 역할 전환 또는 보조교사로 제한

- 교사의 전문성 강화

- 0~5세 연령통합 또는 이원화(0~2세, 3~5세)에 대비한 교사 전문성 강화

- 교사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영아관련 교과목과 내용의 보강 필요

- 현직 교사의 경우,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연수 보강

- 돌봄 관련 다부처 사업의 다양성과 분절성

- 0~12세 공적 돌봄체계의 다양성과 분절성 vs 통합성의 고려
- 교육·보육·돌봄 유관자격제도에 대한 고민
-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의 교육, 보육, 돌봄의 통합적 접근 요구

2 지정토론(4인)

① 이만수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사람 선임연구원)

◎ <유보통합>에 대한 토론

○ 통합 협의체 구성

- 유보통합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유아교육 관계자, 보육관계자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하향식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가 원하는 내용들이 상향식으로 전달되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 및 개정

- 영유아교육과정의 개정이 효율적으로 연구·실행되어야 함.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패러다임을 유아·놀이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나 현장에서는 교사역할 및 구체적인 실행방법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합을 전제로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 통합, 유-초 연계 수립, 내실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방안 등 많은 과제들이 구체적이고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유보통합의 재정적 지원 확보

- 발제자의 발표내용에서 언급한 유보통합의 8요소 중 유보통합이 성공리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Funding)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2023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분석 및 이관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보통합 초기단계에서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뿐 아니라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사업 예산을 포함한 보육재정의 이관 방안이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확한 이해와 타협이 절실히 요구됨

○ 교사의 전문성 강화

- 유아교사는 영아를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연계성과 이해의 차원에서 영아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재교육이 필요. 교사양성기관 교육 과정에 두 집단에 필요한 심화교육과정과 내용 등이 구성되어야 하며 현직 교사들에게는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무슨 내용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지를 파악하여 재교육 시 수강되어야 함
- 또한 통합이후의 교사양성과정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0~2세 대 3~5세로 이원화 하지 않고 영아와 유아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동의함

○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모델을 위한 협력

- 유·보의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연계하는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함
- 교육공동체의 모델로 돌봄과 방과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에듀케어(edu-care)의 개념에서 보육분야가 운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 분야에서 운영한다면 서로 간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

②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 ‘아이 행복’이 보장되는 교육 중심 유보통합 방향(한유총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학 연령이 다른 것뿐이지 누리과정으로 모두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교육부의 직제를 이어받아 각 시·도 교육청에도 유치원지원팀과 어린이집지원팀을

- 조직하여 추진하면 행·재정적인 일원화가 되어 현장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같은 조건의 지원정책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생각됨
- 0~2세 전담은 영아학교, 3~5세 전담은 유아학교, 0~5세 전담은 영유아학교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5% 나왔음. 영아는 보육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과거부터 태내 교육이라고 하지 태내 보육이라고 하지는 않았음. 영아부터 영아 발달에 적합한 맞춤형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영아학교로 표기함
 - 교사 자격 부분에 있어서는 0~2세는 영아학교 교사자격증(현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영아학교교사도 학과제로 변경하여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3~5세는 유아학교 교사자격증(현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으로 변경이 적절해 보임. 그러나 영유아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봄
 - 운영방식에서는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돌봄과정으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교육과정은 4시간 운영,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 1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돌봄과정은 기관 선택에 따라 아침 돌봄과정은 등원전 1~2시간 운영, 저녁 돌봄과정은 방과후과정 16:00이후 1~2시간 운영, 온종일 돌봄과정은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 앞으로는 국가책임제의 하나로 돌봄이 확대되리라 전망됨
 - 유보통합형 영유아학비는 표준교육과정비, 표준방과후과정비, 표준돌봄과정비로 세분화 연구가 되어 과정별 전 영유아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현재 지원되고 있는 표준유아교육비로는 원 운영 예산이 부족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 감소 현상으로 무상교육지원으로는 원 운영이 어려움. 따라서 내년에는 2023 교육부 발표 표준유아교육비로 산출하여 지원해야 함
 - 재정지원은 교육부로부터 받는 재원을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분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또한, 시설환경면에선 영아학교는 현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유아학교는 현 유치원 시설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봄
 - 법제는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이원화 되어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많으므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처럼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③ 임옥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부회장)

◎ 유보통합, 영유아기의 교육체제 통합과제

- 지난 10여 년 전 만3세 ~ 만5세 동일 연령의 교육과정 (누리과정)은 일원화되어 유보통합의 첫 시작을 희망하고도, 서로 다른 소관 부처 및 행·재정체제, 관련 규정 등의 차이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야기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과 수요자의 차별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은 오롯이 현장의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해당 기관의 모든 교직원들이 감내해야 했음
-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와 사회적 합의
 - 0세~만 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과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근본 취지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 준수
 - UNESCO(2012)에서는 보육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원적 시각을 극복 하고 영유아를 위한 통합을 권고함. 보육을 교육의 추가적 보조적 개념으로 이해 해서는 안되며 영유아기는 보육 없이 교육이 완성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함
- 유보통합 추진 방향
 - 격차 해소를 위한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과 행·재정 통합의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쟁점이 되는 이견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 나아가야 함
 - 통일된 명칭으로 영유아, 교사 간의 차별 및 부모의 선택적 차별이 없는 사회적 화합을 유도하여 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의 격차 해소로, 균등한 지원 예산 배분이 기관의 질적 향상으로 연동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의 개선,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함
 - 보육 서비스에 관한 유보통합 관리체제의 일원화를 위한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 발표해야 함
 -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치권, 이해관계자의 우월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충분한 의견 수립 및 관련 정보 공개 공유, 지금까지 보육, 교육기관의 관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협력과 노력이 요구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체제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기본 보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후에는 연장 보육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함. 담임교사들에게 오후 4시 이후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원 준비 시간을 뒤 사실상 오후 5시 이후가 돼야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현실.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13시)까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이 시간에 담임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보다는 수업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이 보장된다면 더 세밀한 교육과정(보육 과정) 운영을 준비해, 영유아들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 및 관리 감독 체제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표로 기준으로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유치원 평가는 교육력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실시
- 유치원의 평가제는 유치원의 수준을 점검하기보다 컨설팅과 조력의 역할로 전환되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2023년부터 컨설팅으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체평가 사업을 시작한 단계로 교사들이 체감하는 평가제의 부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
- 지도·점검 또한, 유치원은 '내려오는 장학'으로 교사들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 찾아와 장학을 해주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민원 또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 및 지도·점검은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나, 그 실행과 과정, 그리고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에 평가와 지도·점검의 보완도 유보통합의 과제 중 하나임

④ 이미정 (충청남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TF팀장)

◎ 유보통합의 현황과 방향

○ 유보통합, 그 거대한 발걸음의 시작

- 2013년에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교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시작되고 유보통합의 걸음이 시작됨.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기관을 다니든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비를 지원받음. 그러나 최근 몇 년 출생아 수 감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환경과 모든 아이의 행복을 보장하는 과정으로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유보통합의 과제

-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①재정 확보 ②영유아, 학부모 등 수요자 우선 고려 ③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 ④ 쟁점에 대한 논의, 격차 해소 등이 있음

과제1)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 2024년까지는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소관의 영유아 보육업무와 관련 정원,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된다는 계획을 교육부는 발표했다.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아울러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의거 학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상에도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과 같이 ‘영유아 보육’이 이관되더라도, 이미 ‘학교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의 지위와 성격에는 변화가 없음

과제2) 재정 특별법 마련

-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2단계로 시도와 시군구가 담당하던 업무를 교육감에게 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교육감으로의 업무이관은 2024년 법률개정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함
-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통합방안은 보건복지부의 국고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지방재정을 모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통합하도록 한다는 계획임.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은 조단위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됨. 따라서 별도의 재정계획이 필요함. 2013년 시작된 누리과정 지원비의 사례를 보면 별도의 재정 계획이 없을 경우 크나큰 혼란을 초래한 것을 이미 경험했음. 시행착오를 반복 하지 않으려면 덩치가 더 큰 유보통합 재정에 따른 특별회계법이 마련되어야 함

과제3) 지방 업무 이관에 따른 보육 재정과 인력 확보

- 연내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국비 재정은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어 각 시·도로 교부됨. 대략 5조원이 넘음. 그러나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관련 특색사업비를 어떻게 이관해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미비함
- 각 시·도청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업무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함. 시·도청과 시군구의 보육업무 담당 인력과 정원을 교육청으로 정밀하게 이관해 오는 과정이 필수임
- 재정 이관 시 국고의 경우 보건복지부→교육부, 지방 차원에서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중앙-지방 4자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지역협의회 등이 논의하여 이관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과제4) 교사 양성과 자격, 처우에 관한 사항

- 교원양성과 자격 및 처우에 관한 부분은 쟁점 사항으로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바른 방향 설정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 방법 등에 대해 숙고와 검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과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교육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교사자격의 전환과정과 실행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함

3 종합토론

질문>

【임옥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부회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돌봄에 대한 내용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심은희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근 졸업생을 보면 주로 유치원에 취업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취업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많아지고 있음. 대학은 3년제 학제로 3학년 1학기때는 보육 실습을 3학년 2학기때는 유치원 실습을 나가고 있음.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 어디에 더 부합한지 진로를 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저희 학과도 교육과정 상 영아교육 내용 부족하다고 느껴 그 부분을 보강하여 강의와 지도를 하고 있음.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만2세까지 받는 영향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영아교육에 더 유능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느낌

의견>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현재 도 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대비에 2개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경우 업무부담 증가가 예상됨. 이에 도 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함

III 토론회 결론

1.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라는 점에는 토론자 모두 공감함.
2. 통합을 위해 영유아교육법 제정, 관련 재정법률 개정 등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3. 장기적으로 통합교사자격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수과목도 영아관련 교과목 보강 등 정비가 필요함.
4.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균질한 평가 및 관리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되길 기대함.
5.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 신설(유아교육과)이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과 등)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 ❖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주요 논의제언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내 요양보호사의 처우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학의 노력이 요구됨.

| 토론회 개요 |

- 일시·장소 : '23. 12. 1.(금), 14:00~17:30 / 충남도의회 303호
- 참 석 : 100여명(충남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 제 :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모색
※ 신청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의원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충청도민과 해당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로,
-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앞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참석자들 모두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에 공감하였음.
- 현재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공유함.

-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점검 및 논의하였음.
- 금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 특히, 적정 수가 문제, 처우개선비, 기관별로 상이한 처우, 시설운영자의 어려움, 인력부족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대표성을 갖추고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임.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이 사업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련기관에 제언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2인)

○ 김선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 현재 요양보호사가 경험하고 있는 처우 관련 이슈로는 낮은 임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과도한 초과근무와 같은근로기준법 준수의 어려움, 교육 부족, 트라우마에 대한 사후조치 부족, 강사풀 부족과 같은 전문성 약화 마지막으로 성희롱 및 폭력, 휴게시간 보장 어려움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위 저하가 있음.
-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①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확대, ② 장기요양 관련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 필요, ③ 시설 외부에 요양보호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 ④ 요양보호사의 휴가·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⑤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무 유도과 동기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⑥ 요양보호사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⑦ 급여 이외의 필요한 지원에 대한 검토 총 7가지를 제언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호자·시설장·종사자 교육 과정’과 ‘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충청남도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한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과 외부고충처리 창구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함. 더 나아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과 처우개선비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힘 써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노인장기요양을 중심으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고령화율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장기요양 수급자는 101.9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9%로 확인되었음.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기관 2.1만 개소, 입소시설 6천 개소 등 약 2.7만 개소임. 한편 요양보호사의 경우 60.1만 명이 근무 중으로 20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는 약 7.5만 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함.
- 그러나 퇴원 노인들을 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하는 등 기존 노인돌봄정책의 한계가 있음.
-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① 지역별 인력 수급 추계 및 확보방안 마련, ②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및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단계적 확충 및 기능 확대가 필요함.
- 충청남도는 ① 장기요양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데이터 관리, ② 취약지역을 위한 근무 유인방안 마련, ③ 지역차원의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 마련, ④ 숙련된 요양보호사 양성과 투입 강화, ⑤ 전문서비스 영역별 종사자 확보 투입 등이 필요함.

[2] 지정토론(4인)

① 김혜경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직업 환경은 결국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임. 또한 발제 내용에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가 종사자와 시설 종사자의 업무내용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방안 마련과 이용자와 종사자간의 소통 및 종사자의 다양한 지원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충청남도는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 어떻게 요양보호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보다 긍정적 명칭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② 유행선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 장기요양현장의 실태조사 결과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나 이는 근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부터 발생된 문제로 여겨짐.
- 발제하신 두 분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현재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현장의 요구는 여러 단위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충남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시 가장 원하는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요양업무 관련 고충처리와 근로기준법 상담 및 법률지원이므로 이를 기반한 노력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③ 김상철 (충무교육원 前 원장)

-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결국 노인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고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이 60.5세이며 27.6%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요양보호사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면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임. 경상남도과 경남교육청은 국비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투입하여 시범단계에 있으므로 우리도 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④ 유양희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 노인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혜적 정책이 아니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처우개선비’ 라는 금액의 양도 중요하나 그 선결조건으로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공정한 분배라는 방향성의 정립도 매우 중요함.
- 종사자 처우개선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충청남도의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의 민, 관이 협업하여 충청남도의 장기요양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③ 청중토론

질의>

장진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남지부 정책이사

-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 다만, 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낭비라고 생각함.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그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됨.

- 승급과 승진에 관한 논의를 하셨으나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직급을 다단계로 나눌 필요는 없어 보임. 또한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정 수가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재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요양보호시설을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시설과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처우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 따라서 중앙-지방-관련기관 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함.

질의>

박상호 재가노인복지센터협회

- 일단 장기요양과 관련한 업무를 지방자치(집행부) 업무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닌 도 차원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노력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작년부터 요양보호시설에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가에는 지급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간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차별을 느끼고 있음.
- 어르신들의 이동도 보조하는 요양보호사가 최근 월체어 작동 실수로 발생한 작은 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었음.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군에는 단체보험이 있긴 하나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이마저도 없는 상황임.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약 1인 1만원 정도 소요되는 이 사업을 도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부터 요양보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군별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이 확대가 된다면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임.

질의>

윤해진 아산장기요양협회 지회장

-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운영과 관련한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현재 추세가 돌봄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비율을 점차 줄이고자 하는데 적정 수가를 전부 정해 놓고 인원만 계속 줄이고자 하면 시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
- 시설 측에서는 수가가 개선되지 않으니 종사자들의 호봉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차라리 국가에서 장기근속수당을 3년, 5년, 7년 단위로 지원해준다면 그것이 호봉의 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임.

질의>

김금숙 아산효림실버케이스 시설장

-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임. 다만,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돌봄케어에 지장이 가고 장기요양 근무일수와 관련해서 시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단순한 문제가 아님.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인력지원을 받아 시설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지속되어서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시설 종사자들이 부재할 경우 임시적으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올해 도에서 cctv를 지원해줘서 감사히 잘 받아 사용했으나 자부담이 20%로 책정되어 있음. 일부는 자부담 조차도 없어서 거절해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자부담 비율을 조금만 더 낮춰줌으로써 좋은 정책과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운영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질의>

윤경자 아산시재가협회 회장

- 아산의 경우 각 시설의 이동차량을 장애인주차공간 한 곳에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차량목록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아파트를 가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음. 일전에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하다가 고발 당한 사례도 있는데 어르신

돌봄을 위한 차량과 주간보호센터의 휠체어 탑재가능 차량이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질의>

이기남 재가협회 예산군 지회장

-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주간보호도 요양원의 운영체계를 따름에도 장기요양의 범주가 애매모호함에 따라 차이와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
-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에서 종사하냐에 따라 인건비, 교통비 지급 여부가 다름.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도 어르신을 모시고 이동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므로 요양보호사와 같이 교통비 지급과 처우개선키가 필요함(현재 주간보호는 재가의 범주에 속한다고 처우개선키 없음).

질의>

김희양 공주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 일부 지역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축소함에 따라 교통지원과 관련해 이전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들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 그 경계가 생겨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음.
- 서천군이 차년도부터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키를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공주시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함. 또한 방금 전 논의되었던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도 서천군과 공주시 딱 두 지역만 지원해주고 있음. 이처럼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모범 사례들을 도 차원에서 접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선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임시 인력을 확보해서 파견했던 것은 코로나 긴급돌봄이었던 것 같고 근무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해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

답변>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정책입안자들도 요양보호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때 기관 간의 정보연계 미흡으로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던 부분도 연계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임.
- 적정 수가는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정책적 한계가 분명히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 분야의 뚜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표성을 띤 조직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함.
- 승진의 경우 방문요양보다는 시설에 필요함. 현장에서 이미 팀장급으로 활동하시는 종사자들이 있고 향후 그룹형 케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그룹을 책임지는 관리자급과 그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함. 일본의 경우 이미 중간관리자 교육을 시행 중에 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의 한 개 부서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우선 법정기관이라 별도 운영이 필요할 뿐더러 단순히 인력 두 세명을 확보해서 권익보호, 노무상담, 교육 등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최소 8~9명의 인력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

5 마무리 말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보탬이 되는 귀한 의견들이 공유되었다고 생각함.
-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온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과 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켜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임. 더 나아가 좋은 방안과

제언들이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마무리발언 : 김응규 /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 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가 확보가 가장 급선무임.
- 적정 수가 확보 외에 기관마다 상이한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 단체상해보험, 임시인력 확보 및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바이나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하여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

결 과

-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시설운영-적정 수가 보장-인력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단계를 나누고 중앙정부와 충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IV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협업을 통해 토론된 내용(의견)이 정책 및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을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해 오랜 여망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인 시위에 함께 참석한 변호사 출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 것에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28일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내 병원들과 업무협약 체결

- 창원한마음병원, 밝은힐링안과내과와 상생발전 노력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와 창원한마음병원(이사장 하충식), 밝은힐링안과내과(대표원장 김창현)는 1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부 도의회 의장과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밝은힐링안과내과 반소연 총괄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세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 소속인 도의원과 직원이 한마음병원과 밝은힐링안과내과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술·시술비 할인, 장례식장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충식 이사장은 “도의회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께 불편함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경남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 도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소연 총괄이사는 “첨단 장비와 그동안 같고 닮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의원들과 직원들의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부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의회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도의회와 병원이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개정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5.]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당해 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 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고등학교이하”를 “고등학교 이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고등학교이하”를 “고등학교 이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45호, 2023. 12. 12.,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하도록 하고, 조합에 신고된 인삼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90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을 경작하거나, 조합에 신고된 인삼 경작지를 상속 또는 양수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인 상을 경작한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양수 또는 합 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료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8.] [대통령령 제33944호, 2023. 12. 12.,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13호, 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하한 금액 및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에 비하여 각각 3배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 해당 사료의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회수 방법 및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6.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7.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제2항 전단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의 공표

별표 1 제1호라목 중 “5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구 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과징금 금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 톤당 1,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 당 15,000원. 다만, 곡물류·곡물부산물류·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짚 나머 지)·성유질류·면실·인산 영류 및 칼슘영 류의 경우에는 1톤당 1,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 당 30,000원. 다만, 규산염제 및 요소제·완 충제의 경우에 1톤당 1,50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 당 75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7,500원. 다만, 곡물류·곡물 부산물류·박 류·성유질류 ·면실·인산 영류 및 칼슘영 류의 경우에는 1톤당 750원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15,000원. 다만, 규산염제 및 요 소제·완충제의 경우에는 1톤당 750원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500만원
--------------------------------------	--------------	-------

별표 2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를 “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6조제1항제4호”를 “법 제36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질의요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 농
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홍성군수가 홍성
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409, 2023. 11. 29., 충청남도 홍성군]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홍성군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홍성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제2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홍성군수가 이와 별도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먼저, 홍성군수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사무가 홍성군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4호너머목에서는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과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홍성군조례안 제3조에서 홍성군수는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홍성군수가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별도로 홍성군수가 농업인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홍성군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10 해석례 참조; 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93 참조).

그렇다면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홍성군조례안의 내용이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홍성군조례안에 홍성군수가 홍성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거. (생략)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생략)

5.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364, 2023. 11. 24., 경기도 부천시]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 본문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단서에서는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대하여 조례에서는 그 차령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충남도의회 “국방수도’ 계룡에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 시급”

-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 채택 -
- “계룡대 소재 등 지리적 중요성에도 방호체계 취약… 방호산업,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계룡시 엄사면 일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체계 구축”이라며 “국방수도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함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 및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엄사면의 방호체계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방위대피소 수준의 방호시설은 오히려 유사시 집단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며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 주요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처럼 방호산업을 핵심국가기반산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해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방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계룡시청, 계룡시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의 정 정 보

- ❖ 발 행 월: 2023년 1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